▌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시행령(Sub Decree on Tax Incentives In Securities Sector) 시행

캄보디아 재경부가 공포한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시행령(Sub Decree on Tax Incentives In Securities Sector)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경우 2015년 1월 8일부터 3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되었고, 5년간 세무서 조사 결과 추가 이익이 확인되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를 면제 받으며, 3년간 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위해 주식 프리미엄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위 시행령으로 캄보디아 주식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PRAKAS on Determination of Minimum Wage for Workers/Employees in the Textile, Garment and Footwear Industries in 2015)

캄보디아 사회복지부가 공포한 2015년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2015년 최저임금은 미화 128달러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위와 같은 최저임금 규정의 시행으로 캄보디아 제조업의 핵심인 섬유, 봉제 등의 산업에서 경쟁국인 미얀마, 방글라데시에 비해 캄보디아가 계속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